

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

2019. 9. 23.



제 1 장. 총 칙

제 1 조 (목적)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(주)서경방송(이하 "서경방송"이라합니다)이 제공하는 전용회선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신고 및 변경)

-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합니다.
- ② 서경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신고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(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)

-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을 경우 그 법령에 의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.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전기통신설비 :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, 기구,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(이하 "설비"라 합니다)
2. 전용회선사용계약 : 서경방송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이하 "사용계약"이라 합니다.
3. 전용회선 : 전용회선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회선
4. 청약자 : 서경방송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한 자
5. 사용자 : 서경방송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
6. 공동사용 :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
7. 타인사용 :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전용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
8. 상호접속 :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접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
9. 혼합사용 : 하나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사용(분할사용)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사용(교차사용)하는 것
10. 수용구역 및 준수용구역 : 전용회선 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수용구역이라 하며, 전용회선 구축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지역을 준수용구역이라 합니다.

- 11. 해제 :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12. 해지 :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
제 2 장. 사용계약

제 1 절 통 칙

제 5 조 (전용회선의 구분)

- ① 서경방송이 제공하는 전용회선은 그 사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.
 - 1. 망내회선 :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기설 망 구역 내 설치된 전용회선
 - 2. 망외회선 : 망내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전용회선
- ② 전용회선은 그 사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.
 - 1. 단기사용 : 전용회선을 1월 미만 사용하는 것
 - 2. 장기사용 : 전용회선을 1월 이상 사용하는 것

제 6 조 (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)

서경방송이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품목 및 규격		내 용
초고속 부호급	10Mbps 회선	매초 당 1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
	20Mbps 회선	매초 당 2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
	30Mbps 회선	매초 당 3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
	45Mbps 회선	매초 당 4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
	100Mbps 회선	매초 당 10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
	155Mbps 회선	매초 당 15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
	1Gbps 회선	매초 당 1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

제 7 조 (통신방식의 종류)

전용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데이터전송 등 비음성통신
2. 전화 등 음성통신
3. 영상전송
4. 기타 서경방송이 업무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통신방식

제 8 조 (서비스지역)

서비스 제공지역은 진주시, 사천시, 남해군, 산청군, 하동군, 함양군 지역 중 서경방송 회선이 공급 가능한 지역입니다.

제 9 조 (사용의 제한)

서경방송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절 전용회선 계약의 청약 및 승낙

제 10 조 (전용회선 사용계약의 단위)

사용계약은 1회선 단위로 체결하며, 요금 납입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2회선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(청약)

① 전용회선 서비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소정의 서류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청약서(소정서식)
2. 요금 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) 사본
3.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

②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
제 12 조 (승낙)

① 서경방송은 사용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. 다만, 서경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

있습니다.

② 서경방송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또는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.

③ 서경방송은 제6조의 초고속 부호급 회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.

1. 사용자는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서경방송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2.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관로 등의 특별한 설비를 사용해서 전용회선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④ 서경방송은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.

1. 개통 예정일

2. 요금 등에 관한 사항

3.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3 조 (승낙의 제한)

① 서경방송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청약 및 청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.

② 서경방송은 청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합니다.

1.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

2. 설치 장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구내통신 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

3.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

③ 서경방송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.

제 14 조 (공동사용의 청약)

①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연구기관,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

2. 언론사, 방송사,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자 등 언론, 방송, 출판관련 기관 상호간

3.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,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영업상
관련자 상호 간
 4.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
상호 간
 5. 공업단지,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
거주하는 자 상호 간
 6. 위 각 호에서 정한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 간
- ②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
1인을 선정하고 공동 사용할 자가 연서하여 서경방송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 납입 책임자가 됩니다.

제 15 조 (공동사용 관계의 입증)

- ① 서경방송은 공동사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
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사용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서류를 서경방송에 직접
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 16 조 (타인사용의 청약)

사용자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밖에 그 전용회선을
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
한하며 이 경우에는 서경방송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를 변경하고자
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.

1. 국가비상 사태 하에서 재해의 예방, 구조, 교통,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
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군사기관, 경찰기관, 소방기관, 재해대책기관 또는 방송통신관서에서 공공적
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이용하는 경우
3.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제 17 조 (상호접속의 청약)

- ①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
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동일인의 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
2. 공동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
3. 그밖에 서경방송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전용회선과 공중데이터 통신망 상호간
2. 망내 및 망외 전용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 (단, 국제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사용하는 망내 및 망외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전화망과 상호 접속하는 망외회선의 경우는 제외)
3.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약서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접속할 장소
2. 상호접속방법 및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
3.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서경방송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.

제 18 조 (혼합사용의신청)

- ① 사용자는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혼합사용 하고자할 경우에는 혼합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측의 설비는 사용자가 부담 설치하여야 합니다.

제 3 절 계약의 변경

제 19 조 (계약사항의 변경)

사용자는 사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계약 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사용자 또는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, 성명, 주소의 변경
2. 공동사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
3. 서비스 품목 및 규격 변경
4. 설치장소 변경
 - 가. 구내설변 : 같은 구내에서의 단말기 설치장소 변경
 - 나. 구외설변 :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 설치장소 변경
5. 단기 사용기간 변경(단기사용에서 장기사용으로의 변경 포함)

제 20 조 (계약사항의 변경 제한)

서경방송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장. 설치공사, 개통 및 유지보수

제 1 절 설치공사 및 개통

제 21 조 (단말기기 등의 설치)

① 사용자측의 단말기와 회선 종단장치(MODEM, ONU, ONT, DSU 등. 이하 "단말기기 등" 이라합니다)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경방송이 단말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② 단말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사용자의 주소,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
2. 공해방지, 방재, 교통관제, 의료, 공항관리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장소
3.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의 수행 상 필요한 장소
4.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및 서경방송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경방송은 사용자 측 설비에 회선시험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제 22 조 (전용회선의 개통)

① 전용회선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경방송에서 통보한 개통 예정일에 개통합니다. 이 경우 서경방송은 개통 예정일전 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,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
② 서경방송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. 다만, 청약자가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 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.

③ 청약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서경방송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 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전용회선이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⑤ 서경방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.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.
- ⑥ 청약자는 제5항의 재개통일에도 개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제 23 조 (전용회선의 운용점검)

서경방송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(구내교환설비는 제외합니다)이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 후에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절 유지보수

제 24 조 (단말기기등의 유지 및 보수)

- ① 사용자는 사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서경방송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, 보수하여야 합니다.
-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등의 변경등을 하는 때에는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합니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으로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제 25 조 (고장신고 및 처리)

- ① 사용자는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경방송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②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
제 4 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

제 26 조 (서경방송의 의무)

- ① 서경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신청한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서경방송은 약관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③ 서경방송은 서비스 제공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설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책임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④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, 서비스 재개를 위한 서경방송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사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, 관리합니다.
- ⑤ 서경방송은 전용회선서비스 제공 중에 지득한 사용자의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지 아니합니다.
- ⑥ 서경방송은 이용약관을 고객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. (지정된 홈페이지 "www.iscs.co.kr"에 게시하여 공지)
- ⑦ 서경방송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 27 조 (사용자의 의무)

- ① 사용자는 서경방송이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② 사용자는 서경방송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이동, 철거, 변경,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사용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,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④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 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⑤ 사용자는 청약서에 신고된 주소 또는 일반전화번호 등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경방송으로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.

제 28 조 (사용자의 지위승계)

상속, 합병, 분할, 영업 양수 등으로 사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(법인에 한합니다)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경방송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5 장 서비스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 등

제 29 조 (서비스제공의 중지)

①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1. 서경방송의 승인없이 설비를 이동, 철거, 변경,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한 때
2. 요금납입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

②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일의 7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.

③ 서경방송은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.

제 30 조 (사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①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전에 사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개시 후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일전까지 사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청서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 서경방송은 제13조(승낙의 제한)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제29조(서비스제공의 중지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 된 후 서경방송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④ 서경방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.

제 6 장 요 금

제 1 절 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

제 31 조 (요금의 종류)

① 전용회선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장치비 :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승낙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요금
2. 회선사용료 : 전용회선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
3. 기기사용료 : 서경방송로부터 회선종단장치 등 전기통신기자재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, 적용기준 및 대상 등은 "별표 제1호"와 같습니다.

제 32 조 (장기사용 요금)

① 제31조의 요금 중 장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장치비 :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.
2. 회선사용료 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사용요금으로 하며, 개통일,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1월의 사용요금을 당해 월 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1일의 요금으로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. 이 경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개통일,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.

② 장기사용자가 개통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사용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제 33 조 (단기사용 요금)

① 제31조의 요금 중 단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장치비 : 장기사용요금의 장치비와 동일합니다.
2. 회선사용료 : 첫째날은 장기 사용월액의 20%,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 사용월액의 3.33%(1/30)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이 경우에 그 액수가 장기사용 요금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사용요금의 월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② 단기사용에 있어서 사용일수의 계산은 장기사용요금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.

제 2 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

제 34 조 (요금납입책임자)

- ① 서비스 사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. 다만,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합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.

제 35 조 (요금의 납입 기일)

전용회선의 사용과 관련된 요금의 납입 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1. 사용 월의 말일에 납입해야하는 요금
 - 가. 장기 사용에 의한 요금
 - 나. 기기 사용료
2. 서경방송이 지정하는 날에 납입해야하는 요금
 - 가. 단기사용에 의한 요금
 - 나. 장치비
 - 다. 당월의 중도에 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

제 36 조 (요금의 납입 청구)

- ① 서경방송은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. 다만,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와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2인 이상의 사용자가 연대하여 요금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.

제 37 조 (요금의납입 의무)

-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② 사용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 제공 중지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③ 사용자가 제19조의규정에 의거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
-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는 연대하여 요금납입의 책임을 집니다.

제 38 조 (요금납입의특례)

서경방송은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주한외국기관 또는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(상급기관 또는 주된사업소,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)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제 39 조 (요금납입 의무의 소멸시효)

서비스요금의 납입의무는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. 다만,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 40 조 (이의 신청)

-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경방송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②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.
-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서경방송은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요금이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납입기한을 재지정하여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납입청구서를 발송합니다.

제 3 절 요금의 감면. 할인 및 반환

제 41 조 (요금의 감면)

- ① 서경방송이 서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및 "별표 제3호"와 같습니다.

1. 공중통신업무를 직접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관리용 전용회선 및 종합민원용 전용회선이라고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경우
 2. 서경방송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, 그 사용이 중단된 경우
- ② 서경방송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인명, 재산의 위협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
 2. 군사.치안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
 3. 전시에 군작전상 필요하여 서경방송이 지원.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경우
 4.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감면대상, 감면율 및 적용기준 등은 "별표 제3호"와 같습니다.
- ④ 감면은 장기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중복 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42 조 (요금의 할인)

- ① 서경방송이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는 "별표 제2호"와 같습니다.
- ② 할인은 장기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 43 조 (요금의 반환)

- ① 서경방송은 사용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사실을 서경방송에 통지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서경방송이 알게 된 때로부터 1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장애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회선사용료를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. 이 경우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(24시간)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회선사용료를 반환하며, 24시간 초과 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환합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액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1. 1일회선 사용료 = 월회선 사용료 ÷ 30(일)
 2. 1시간회선 사용료 = 1일회선 사용료 ÷ 24(시간)
 3. 단기사용인 경우의 1일회선 사용료 = 단기사용 총회선 사용료 ÷ 단기사용 일수
 4. 단기사용인 경우의 1시간회선 사용료 = 단기사용 1일회선 사용료 ÷ 24 (시간)

- ③ 서경방송은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요금의 월액인 때에는 차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대등액을 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.
- ④ 서경방송은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절 체납 요금 및 면탈 요금의 징수

제 44 조 (가산금의 부과)

- ① 사용자가 청구서에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

제 45 조 (면탈요금의 징수)

- ① 서경방송이 면탈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.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에 다른 선로, 기기 등을 연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
 - 2.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
 - 3. 기타 이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.

제 7 장 손해배상

제 46 조 (손해배상)

- ①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서경방송로부터 제공받은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서경방송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12시간이상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.(제43조 요금반환규정 적용)
- ②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

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전시·사변·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 2.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- ③ 제1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요금 중에서 감액 처리합니다.
- ④ 서경방송은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2.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

[별표 제 1호]

요 금 표

1. 회선사용료 (월액)

(부가세 별도, 단위: 원/월)

구 분	초 고 속 부 호 급						
	10Mbps	20Mbps	30Mbps	45Mbps	100Mbps	155Mbps	1Gbps
수용 구역 내	250,000	500,000	750,000	1,125,000	2,500,000	3,875,000	25,000,000

※ 단기 사용 시 일액 계산방법

- 첫째 날 : 장기사용 월액의 20%
- 그 다음 1일마다 : 장기사용 월액의 3.33%(1/30)
- 일액합산 요금의 장기사용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사용 월액을 적용

2. 장치비 (신규설치및설치변경에대한 1회비용)

(부가세 별도)

대 상 품 목 및 규 격		요 금		비 고
		신 규	설 변	
초고속 부호급	10M, 20M, 30M, 45M,100M, 155M, 1Gbps	500,000원/회선	구내: 125,000원/측 구외: 250,000원/측	○ 장기,단기 동일

3.기기사용료(월액)

(부가세 별도)

구 분	설 비 명	규 격	요 금	비 고
회선종단장치 (MODEM)	ONT	10Mbps ~ 1Gbps	8,000	○ 장기,단기 동일 ○ 초고속용
	미디어컨버터	10Mbps ~ 1Gbps	8,000	

* 상기 이외의 특수 회선종단장치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제공

4. CCTV 영상전송

○ 사용료

(부가세 별도)

구 분		제공 가격	비고
망내전용	수용구역 내	105,000원	1회선당 카메라1대

※ 동일 장치에 카메라 추가 설치시 1대당 60% 요금적용

- 장치비 : 80,000원/단축 (개통, 설변, 규격 변경, 카메라 추가 시 1회 한 청구)
- 장비임대료 : 8,000원/월
- 기타 시설비 : 카메라, 모니터, 관제센터 구축 등 부대장비에 대한 설치 비용을 실비계산

※ 해당 요금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됩니다.

5. 국가정보통신서비스(E그룹) 참여에 따른 CCTV전용회선 서비스

○ 사용료

(부가세 포함)

구 분	회선 속도	무약정	3년 약정	5년 약정	비고
신규계약	1Gbps	72,600	60,500	49,500	
	장비 임대료	실비청구	11,000	8,800	
재계약	1Gbps	50,820	42,350	34,650	
	장비 임대료	실비청구	11,000	8,800	

※ 어린이보호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, 도시공원, 놀이터 등에 적용

※ 장비임대료 : 8,800원/월, 설치비: 11만원/1회(개통, 설치변경, 규격 변경 시 청구)

○ 할인율(다량이용)

구분	5백~1천만	~3천만	~5천만	~1억	~3억	~5억	~10억	~15억
할인율(%)	5%	7%	9%	11%	13%	15%	17%	20%

○ 할인율(다회선 이용)

구분	100~399회선	400~699회선	700~999회선	1,000회선 이상
할인율(%)	5%	10%	15%	20%

※ 다량이용 및 다회선 이용은 중복 할인 불가

[별표 제 2호]

요금 할인 표

1. 장기계약 할인

가. 할인대상기준 : 요금납입 책임자별 적용

나. 할인대상 및 할인율

- 1년이상 계약 사용 : 월 회선임대료 분의10%
- 2년이상 계약 사용 : 월 회선임대료 분의20%
- 3년이상 계약 사용 : 월 회선임대료 분의30%
- 4년이상 계약 사용 : 월 회선임대료 분의40%

다. 계약기간 변경 시 할인율 적용방법

- 계약기간 만료 전 변경 시 변경시점 익월 1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
- 계약기간 단축하여 변경하는 계약은 불가

라.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부과

- 위약금 : (할인 전 월 사용료 x 사용 개월 수) x (계약기간 할인율 - 사용기간 할인율)

※ 위약금 산정식에서 사용기간 할인율은 무 약정 사용 후 해지시는 0% 할인율 적용,
1년 이상 2년 미만 사용 후 해지시는 1년 이상 계약사용 시 할인율 적용,
2년 이상 3년 미만 사용 후 해지시는 2년 이상 계약사용 시 할인율 적용,
3년 이상 4년 미만 사용 후 해지시는 3년 이상 계약사용 시 할인율,
4년 이상 사용 후 해지시에는 4년이상 할인율을 적용함.

2. 고속예비회선 할인

가. 할인대상기준 : 망내·외구간 예비용 고속회선(10Mbps 이상)

나. 적용방법 : 고속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동일구간에 신청한 예비회선

다. 할인율 : 망내, 망외 50%

[별표 제 3호]

요 금 감 면 표

1. 인명,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

- 감면대상기관 : 민방공 및 소방기관,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
- 감 면 율 : 30 %
- 감면대상요금 : 초고속 부호급 10Mbps ~ 1Gbps

2. 군사, 치안기관이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

- 감면대상기관 : 군사기관(미8군포함), 치안기관,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실, 국가안전기획부
- 감 면 율 : 30 %
- 감면대상요금 : 초고속 부호급 10Mbps ~ 1Gbps

3. 정보이용활성화, 정보문화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·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

- 감면대상기관 :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,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- 감 면 율 : 30 %
- 감면대상요금 : 초고속 부호급 10Mbps ~ 1Gbps

4.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 망내 회선을 제공하는 경우

- 감 면 대 상 :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내 설비제공 회선용
- 감 면 율 : 회선 전용료의 5%내에서 할인 적용
- 감면대상요금 : 초고속 부호급 10Mbps ~ 1Gbps